

獨逸에 있어서 保護關稅制 導入과 F. List

金 光 洪 淳*

1. 序 言
2. 關稅同盟(Zollverein)의 結成
3. Friedrich List의 主張
 - ① F. List (1789~1846)의 生涯
 - ② F. List의 經濟理論
4. 독일 商工業協會
5. 結 言

一. 序 言

半世紀동안에 2次에 걸친 世界大戰을 일으켰던 독일은 世界史上 最大的 悲劇的主人公이며 또한 깊은 矛盾을 안고 있는 이 民族의 걸음걸이는 항상 世界史에 있어서 가장 重大했던 問題의 核心이기도 하였다. 世界 二次大戰後 三分裂 當하여 政治的 經濟的 文化的 그리고 宗教的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苦難을 겪었던 독일은 普佛戰爭以後 비스말크(Bismarck)에 依하여統一되어 질때까지는 分裂의 나라이였다. 그와같이 長期間에 걸쳐 統一을 實現하지 못하고, 또한 割據主義의 痘弊 속에서 헤여나지 못하였던 독일이 어떻게 19世紀에 있어서 그렇게까지 強力한 國民으로 되고 나아가 世界를 支配하려고 2回에 걸쳐 試圖할 수 있었든가? 世界 二次大戰에서 敗한 독일은 完全히 폐허化되었고 거기다 더욱이 分割 占領當하여 도저히 再起가 不可能하리라고 생각되어 졌었다. 그러나 이 民族은 所謂 라인江畔의 奇蹟을 이루하였고 여러 戰勝國家가 이루하지 못한 戰後의 經濟的復興과 번영을 超短時期內에 이루하였다. 독일의 한牧師 니—메라—는 독일과 日本의 兩國民이 戰爭을 일으키지 아니하는限 世界大戰은 또 다시 발발하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간파하였다. 西洋에 있어서의 독일과 거의 모든 事情과 條件

* 經濟學科 助教授(經濟學博士)

이 近似한 國民이 바로 우리 이웃인 日本이다. 독일과 日本은 實體적으로 後進資本主義國家로서 거의 같은 時代에 있어서 近代國家에로의 첫발을 걸기 시작하였으며 其後 急激히 제국주의적 國家에로 發展하였다. 그리고 이 過程에 있어서도 거의 같은 政治的性格을 띠웠고 같은 社會的 經濟的 發展을 이룩하였다. 독일의 自然科學, 哲學, 社會科學 特히 法律制度는 日本의 近代化에 있어서 至大한 영향을 주었다. 좋은 點에 있어서나 나쁜點에 있어서 日本과 독일은 너무나 같거나 닮은點이 많다. 獨日兩國民사이에 깊은 關係가 있는 것보다 더욱 오래고 깊은 關聯을 맺고 있는 것이 韓日兩國이다. 日本이 近代化하기 以前까지는 韓國으로부터 文化的 宗教的 經濟的 그리고 政治的面에서 많은 도움과 영향을 입었으며 近代化以後부터는 한국은 日本에게 屬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제 우리는 더욱 깊이 이웃을 알아야할 必要와 義務를 갖고 있다. 이러한때 日本을 分析하기 以前에 먼저 日本과 가장 긴밀하고 오랜 關係를 맺고 있는 독일을 研究한다는것 또한 의의가 깊을 것이다라고 믿는다. 더욱이 資本主義가 成立할 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F. List의 保護主義의이고 國民主義의인 思想은 오래고 깊은 夢眠에서 깨어나 숨가쁜 成長과 跳躍 그리고 安定을 이룩하려고 계속적인 努力を 기울여야할 우리에게 極히 긴요하고, 또 도움됨이 크리라고 확신하면서 여기에 이 小考의 分析目的이 있다고 할수 있다. 이 研究에 있어서 利用하거나 參考되어질 문헌에 關하여 다음과 같이 三分類하여 紹介한다.

a) F. List의 저작

Das nationale System der politischen Oekonomie, Stuttgart, 1841 mit Bibliogr, 1925.

Schriften, Reden, Briefe, im Auftrag der Friedrich List Gesellschaft e. V. mit Unterstützung der deutschen Akademie und der Notgemeinschaft der deutschen Wissenschaft, herg. von Erwin v. Beckerath, Karl Goesen, Friedrich Lenz, WilliamNotz, Edgar Salin, Arthur Sommer, 10 Bde., 12 Tle., Berlin, 1927-1935

Friedrich Lists gesammelte Schriften, 3 Bde., 1850, herg. von Ludwig Häusser

b) F. List에 關한 문헌

Goldschmidt, Friedrich: Friedrich List, Deutschlands großer Volkswirt, Berlin, 1901

Jentsch, Karl: Friedrich List, Berlin, 1901

Hirst, Margaret E.: Life of Friedrich List and Selections from his Writings, London e. New York, 1909

Sommer, Arthur: Friedrich Lists System der politischen Oekonomie, Jena, 1927, (List-Studien, 1)

Lenz, Friedrich: Friedrich List, die "Vulgärökonomie" und Karl Marx, Jena, 1930

Olshausen, Hans-Peter: Friedrich List und der Deutsche Handels-und Gewerbeverein,

Jena, 1935. (List-Studien, 6)

Heuss, Theodor: Friedrich List. In: Die großen Deutschen, III. Berlin, Berlin, 1956

Lenz, Friedrich: Friedrich List, der Mann und das Werk, München und Berlin, 1936

Mayer, Gertrud: Friedrich List als Agrarpolitiker, Stuttgart, 1938

Ritschl, Hans: Friedrich Lists Leben und Lehre, Tübingen und Stuttgart, 1947

Brinkmann, Carl: Friedrich List, Berlin und München, 1949

c) 產業資本主義 成立時期에 있어서 독일 經濟 政治에 關한 문헌

Göthein, Georg: Der deutsche Außenhandel, 1901

Hoffmann, Walter G.: Das Wachstum der deutschen Wirtschaft seit der Mitte des 19. Jahrhunderts, Berlin, Heidelberg und New York, 1965

Levy, Hermann: Ausfuhrzölle und die deutsche Handelspolitik, Berlin, 1907

Lütge, F.: Deutsche Sozial-und Wirtschaftsgeschichte, Aufl. 3, Berlin, Göttingen und Heidelberg, 1960

Passant, E. J.: A Short history of Germany, 1815-1945, Cambridge, 1962

Plaut, Theodor: Deutsche Handelspolitik, Aufl. 2, Leipzig und Berlin 1929

Sartorius von Waltershausen, A. Deutsche Wirtschaftsgeschichte, 1815-1914, Jena, 1920

Sombart, W.: Die Deutsche Volkswirtschaft im neunzehnten Jahrhundert und im Anfang des 20. Jahrhunderts, Stuttgart, 1954

Stein Walter: Handels-und Verkehrsgeschichte der deutschen Kaiserzeit, Berlin, 1922

Bechtel, Heinrich: Wirtschaftsgeschichte Deutschlands, Bde. 3, München, 1956

Clapham, J. H.: Economic development of France & Germany, 1815-1914, Aufl. 4, Cambridge, 1963

독일 민족의 神聖로마제국皇帝는 中世에 있어서 유우롭의 主였다. 그러나 하나의 國家를 形成한 하나의 독일 國民이 形成된 것은 겨우 普佛戰爭의 勝利를 가져온 1871年以後의 일이다. 統一된 독일제국이 形成되어질 때까지 독일은 數百의 諸侯들의 領國과 自由都市로 分裂되어져 있었으며 그들은 그들의 支配者能力의 大小 或은 그名譽慾에 따라 相互 攻防이 계속 되어졌던 것이다.

16世紀初에 이르러 비로서 독일은 그 歷史의 決定的 轉換點에 서게되었다. 이미 독일은 예전 상태와 分野에 있어서 時代的으로 뒤떨어져 있었으며 그속에서 다만 어폐한 새로운 것의出生을 도와야할 使命을 가진 要素가 發展하고 있었다. 即 農民들이 Grundherr를 위하여 行하였던 無償賦役의 廢止에 對한 農民들의 切望, 宗教機構와 團體가 所有했던 巨大한 教會所領의 世俗化와 分配를 要求하는 下層騎士階級의 부르짖음 그리고 上流貴族의 專橫에 對하여 保護를 바라는 都市商工階級의 努力等이 교묘하게 配合하여 自由스러운 독일의 將來를 可

能케 하려는 社會的 動요가 徐徐히 일기 시작했던 것이다. Martin Luther (1483~1546)에 依하여 點火되어진 宗教改革과 三十年戰爭(1618~1648)을 거친 독일은 割據主義를 特色으로 하고 있었다. 三十年戰爭後의 독일은 荒폐지였고 戰爭의 瘡痕은 決코 사라지지 아니하였다. 戰爭은 독일 民族의 性格을 形成하고 그 歷史를 规정하고 그리고 나아가 後에 政治的 社會的 發展의 모습을 定했다. 不幸한 戰爭이 끝난지 數十年後 十七世紀末에 있어서 東部에 全聯邦國家中에서 그 組織과 세력의 點에서 월등히 뛰어난 새로운 하나의 독일國家가 있었다. Brandenburg 邊境國의 호엔츠른家에 依하여 건설된 Preussen이 이것이다. 푸로이센의 形成은 大選帝侯 Friedrich Wilhelm 一世(1640~1688)의 功績에 依하여서다 그는 中央集權을 확보하고 最初의 常備軍을 組織했고, 또한 經濟的 施設의 대학장과 外國技術人の 초빙등에 依한 自國의 번영을 促進시켰던 것이다. 그리고 나아가 隣接諸邦에 對하여 向上된 푸로이센의 地位를 인식시켰고 푸로이센에 對한 Poland의 宗主權을 否認했던 것이다. 푸로이센에게 독일의 主導權을 求하는 可能性을 이룩한 것은 第二代王 Friedrich Wilhelm 一世(1713~1740)의 업적이다. 17世紀는 푸로이센의 탄생과 同時에 Preussen主義의 發展을 가져왔던 것이다. Preussentum은 푸로이센的인 氣風, 정신으로부터 푸로이센的 國家體制를 包含한 푸로이센의 世界의 의미로 使用되어졌다. 1807年으로부터 1825年사이에 制定되어진 法律에 依하여 農奴는 해방되어진 形式으로 되었으나 實際에 있어서는 Junker라고 불리워졌던 土地貴族의 세력이 强하였다. 18世紀의 푸로이센에 있어서는 階級鬪爭은 存在치 아니하였으나 가장 重要한 階級으로서는 Junker階級 오로지 하나이었다. Elbe 江以東地域의 地主貴族이었던 Junker의 經營은 점차 資本制의 經營으로 轉化하면서 同時에 또한 農民에 對한 封建的 抑壓을 계속하고 있었다. 1740年以後 독일은 封建社會 解體의 最後段階에 들어갔다. 그것은 또한 독일절대主義의 初期에 해당한다. 封建社會 解體의 指標는 무엇보다도 그 根據로서 있는 基本條件, 封建的 土地所有制의 變化中에서 구하여야만 할것이다. Schlesien 征服後 겨우 Elbe 以東의 푸로이센에도 古來의 手工業이 近代的인 工業을 發達시킨 都市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工業은 거의 全혀 國家의 創作物이었고 民間銀行이 出現하기 以前에 이미 國家에 依하여 銀行이 創立되어졌다. 독일에 對한 資本主義發展이 처음부터 國家의 推進하는 바에 依하여 이루어 졌다는 것을 重要視해야만 한다.

二. 關稅同盟의 結成

Hansa 時代에 있어서의 독일의 國民力은 이미 完全한 過去의 일로 간주하고 1630年에 同盟의 해산이 行하여진後 Hansa의 번영은 凋落의 길을 더듬었다. 한때 同盟의 盟主로서 指導的

인 役割을 다하였던 Hamburg, Bremen 그리고 Lübeck 間에서는 商易關係를 基礎로 한 名目的
인 同盟이 殘存하고 있었으며 當面한 關稅問題에 關한限 相互 같은 立場을 취하고 있었다.
이 Hansa 同盟의 自由市들은 독일에 있어서 唯一의 創造的인 寄與라고 할수 있는 國民市場과
國民的生產力의 創出形成運動에 反旗를 들었던 것이다¹⁾. 自由貿易主義를 採擇했던 Hansa 貿易의 二特質은 첫째 投機的 商業利潤의 機會를 高度로 保證하는 열대產諸商品, 설탕, 담배,
香料等의 去來이며, 둘째는 英國產 工業製品의 輸入과 北東獨의 農產物의 對英輸出이였다²⁾.
英國에 있어서의 經濟的自由主義 思想의 發達과 그리고 그 實踐에의 움직임은 유우롭大陸의
諸國에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일찍 產業革命의 過程을 거친 英國은 世界工場으로서 모든
나라에게 工業生產品을 輸出하고 또 그들의 工業이 必要로하는 原料品이나 식량을 輸入하
고 있었다. 이와 같이 先進狀態의 英國을 위하여서는 自由貿易이 가장 적절했었는데 對하여
독일을 비롯한 소위 後進狀態에 처해있었던 諸國에 있어서는 그들의 工業化를 위하여서는 保護
貿易政策의 採擇이 必要했었던 것이다. 그러나 保護關稅政策의 긴요성을 느끼면서도 當時
의 時代의in 思潮는 英國의 自由貿易政策의 영향을 받지 아니할 수 없었다.

19世紀初 Napoleon의 독일支配와 이에 계속된 大陸制度의 覆滅과 뷔엔나會議後의 約 20年
間의 時期에는 現實의 政治的 經濟的 諸關係中에서 關稅制度의 國民的統一을 둘러싼 憲
對立과 論爭이 交錯했다. 卽 統一關稅에 對하여 主導的인 역할을 했던 푸로이센, Preussen과
同一한 路線을 指向하면서 이에 對決하는 Bayern, Württemberg, 統一關稅制에 反對하고 親
英的인 Hessen과 Sachsen 中間的인 立場에서 傳統的이고 反動的인 Oesterreich 그리고 無關心
한 態度를 取하였던 Baden等 복잡한 政治的 關係가 支配하고 있었다. 불란서와 독일의 後進
工業育成을 爲하여 크게 기여하였던 Kontinentalsystem은 나포래은統治의 붕괴後 와해하기 시
작했으며 이것은 독일에 對하여 經濟적으로 침각한 혼란을 가지고 있던 것이다. 1814年 6月
28日 후랑크홀트(Frankfurt/M)의 商況報告書는 이러한 經濟的 困難으로부터 구제되기 위
하여서는 독일에 있어서의 生產業과 交易關係가 結合하여 새로운 活路를 打開하는 수밖에 다른
手段이 없다고 지적했다³⁾.

Napoleon의 覆滅과 平和回復 뷔엔나會議에 依한 Preussen의 새로운 領域의 保全과 확보를
위하여서 새로운 關稅法 採用의 必要性을 절감했던 푸로이센의 關稅統一에의 決定的인 出
發은 1818年 5月 26日의 關稅法이다⁴⁾. 이 新關稅法의 立案者이었던 Karl Georg von Maas-

1) Vgl. 松田智雄: ドイツ資本主義の 基礎研究, 東京, 1967, S. 111~112.

2) Soetbeer: Über Hamburgs Handel, Hamburg, 1840, S. 102, 133, 135 u. 291.

3) Vgl. H-P. Olshausen: Friedrich List und der deutsche Handels-und Gewerbsverein, Jena, 1935, S. 13.

4) Hermann Oncken: Vorgeschichte und Begründung des deutschen Zollvereins, 1815~1834, Berlin, 1934, S. 3

sen은 當時 독일에 流行하고 있던 Adam Smith (1723-1790)의 經濟思想의 保持者이었다. 稅率은 可能한限 낮게 定하는 것이 푸로이센의 本意에 기여한다고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關稅法에서는 稅率은 一般的으로 낮았고 原料品中에는 免稅의 것도 있었다. 그리고 高率의 關稅가 부과되어졌던 것은 푸로이센을 最終消費地로 하고 있지 아니한 通過商品外에는 철향, 코피等의 植民地商品等이었으며 輸入이 禁止되어졌던 것은 소금이나 트럼프와 같은 專賣品이었다. 新關稅法은 1818年 5月 26日 國王의 재가를 得하고 1819年 1月 1일부터 全 푸로이센에 効力を 發生케 되었다. 이때 독일은 關稅的 統一問題에 있어서 最初의 그리고 重大한 충격을 받았다. 이 新關稅法은 Enklavenpolitik에 依하여 小國들을 하나의 體系속으로 吸收하고 여기에 統一的인 푸로이센 經濟領域을 成立시켰던 것이다⁵⁾. 푸로이센은 그의 北東部農業生產物의 販路인 外國 特히 英國市場을 확보하려고 非難의 의미를 表現하는 소위 自由貿易制度를 通하여 相互의特惠關係를 留保시키려 努力했다. 그런故로 小領邦壓迫에 對하여서는 聯邦議會에 있어서의 反對가 對外特惠에 對하여서는 他독일諸邦의 生產者로부터의 批判이 向하여졌다. 新關稅制度의 導入後 독일內에서는 賛反意見이 빛발치듯 일어났다. 全독일의 到處에서 生產業에 從事하는 사람들은 國王이나 政府에 對하여 工業의 破壞를 阻止하고 救하기 위하여 外國과의 競爭에 있어서 國家的保護 그리고 國內市場의 確保를 청원하였던 것이다. 라인地方의 纖維工業에 從事하는 사람들은 Benzenberg가 起案한 청원서를 國王에게 提出했다. 1818年 4月 27日附로 Rheydt, Gladbach, Viersen, Kalden-Kirchen等地의 工場所有者等 70名의 서명으로 이룩된 저명한 文書가 이것이다⁶⁾. 反對의 立場을 取하였던 F. List의 同調者였던 Ernst Weber의 意見과 작센 휴링겐工業所屬者의 一人으로 匿名으로 發表했던 意見은 다음과 같다⁷⁾

“푸로이센王國의 關稅規定에 있어서는 隣接독일諸國의 商品이 독일에 敵對的으로 結託하고 있는 英國人 및 佛蘭西人的 그것보다 더 雄厚 높은 關稅를 부과되어지고 있다. ……稅法에 依하여 隣接독일諸國의 商品은 거의 全히 驅逐되어지는 것으로 되고 모두 極度로 僅少의 利益을 주는데 지나지 아니하는 粗惡한 種類의 그것에만 限定되어지고 있다. 푸로이센國內生產조차 이것에 依하여 极심한 苦境에 直面하고 있다. 精巧한 佛蘭西와 英國商品은 이러한 國民이 多年間 그 關稅制度에 基하고 있는 優越性에 있어서는 7~8%程度의 賦課는 푸로이센의 工業의 保護일 수는 없다.”

이와 같은 批判的立場에 對하여 Gotha의 商人인 E. W. Arnoldi 같은 사람은 푸로이센政府의 考慮를 솔직히 환영하면서 이 新關稅法은 全독일 國家結合의 最初의 萌芽이라고 主張했

5) Vgl. Kulischer; Allgemeine Wirtschaftsgeschichte des Mittelalters und der Neuzeit, Bd., II, 1928.

6) Vgl. 松田智雄: a. a. O., S. 97~98.

7) Vgl. a. a. O., S. 100.

된 것이다. 1818年末 Düren의 工業生產者들은 할렌벨크에 對하여 다음과 같이 支持의 뜻을 傳했다⁸⁾.

“우리들은 閣下에 對하여 慈悲로운 國王의 王座下에서 外國商品에 對하여 關稅에 關한 새로운 制度를 制定 公布해 주신 慈父와도 같은 配慮에 對하여 뜨거운 감사의 뜻을 傳하여 주시기를 간청하며 이 國內工業을 祝福하기 위한 施策은 이미 은혜에 넘치는 結果를 나타냈다. 그리고 우리들의 衰滅에 直面했던 工場生產과 手工業者等에 새로운 生命을 넘치게 했다.”

이와 같이 賛反의 激論이 交錯하고 있는데 對하여 Hamburg出身의 歷史學者 Aegidi는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⁹⁾.

“1818年 5月 26日의 푸로이센稅法이 他독일諸國에 미친 영향, 이것은 아마 푸로이센에 있어서는 幸福한 必要이며 그 内部에 保存하고 있는 1,000萬의 독일人們이 원하는바 統一形成에의 強力한一步이었으리라…… 그러나 그럼에도 不拘하고一般的으로支配되어지는 國民的與論의 有力한 證明에 따른다면 否認할 수 없는 독일의 災害이었다.”

Hamburg의 商人 M. J. Haller는 工業을 위한 保護關稅를 配격하고 財政關係와 그가 스스로 제안한, 相互 決定하고 公平하게 課稅되어지는 알맞는 通過關稅만을 승인함으로써 Hansa的인 自由貿易論을 表現했다. 自由貿易論은 國民經濟의 諸範疇 國民的市場 國民的生產에 關한一切를 卽特殊한 독일적인 歷史, 社會的 條件의 一切를 捨象하고 純粹한 國際商品流通 貨幣流通에 있어서의 値賴 利潤의 축적을 가지고 여기에 國民的富의 增進을 뜻한다고 보았던것이다¹⁰⁾. Hamburg의 Börsenhalle를 通하여 自由貿易論이 Organ für die dentschen Handels- und Fabrikanten을 利用해서는 保護關稅論이 自己들의 意見을 發表함으로써 爭論을 계속했던 것이다.

독일은 19世紀前半부터 普佛戰爭에 이르는 期間 主로 域內關稅를 輕減하고 關稅同盟(Zollverein)을 形成하는 것에 依하여 國內經濟發展의 基礎를 強化했다. 自由主義思想의 영향은 독일의 統一과 독일 經濟發展에의 기초를 이루었던 것이다. 19世紀의 初葉에 있어서 독일은 數많은 小主權國으로 分割獨立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 割據하는 國家間에는 關稅가 설정되어져 있었을 뿐만아니라, 푸로이센같은 나라는 内國關稅까지 부과했었기 때문에 產業의 發展을相當히 阻害시켰던 것이다. 독일에 있어서 自由貿易에의 움직임은 먼저 이 内國關稅制를 除去하였으며 나아가서는 小主權國家間의 關稅를 철폐하여 關稅同盟을 結成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이때 가장 先導的인 役割을 했던 것이 푸로이센이었음을 前述한대로다. 푸로이센은 18

8) Vgl. Hermann Oncken: a. a. O., I, S. 82.

9) Vgl. 松田智雄: a. a. O., S. 103.

10) Vgl. a. a. O., S. 106~107.

18年에 內國關稅를 철폐하고 輸入稅를 輕減하여 自由貿易의 色彩를 強化했던 것이다. 푸로이센 財務相 Motz(1825~1830)와 Maasen(1830~1834)은 푸로이센의 領導下에서 독일의 經濟的統一을 實現하려고 努力했다. 勿論 이때 그들은 割據主義의 側面으로 부터의 阻抗을 預측하지 아니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들의 꾸준한 努力은 1828年 Hessen-Darmstadt, 이어서 1833年에는 Bayern 및 Württemberg와의 關稅協定의 체결에 成功했던 것이다. 1834年 1月 1日에 發効된 Zollverein이 푸로이센을 盟主로하여 18個領邦에 依하여 結成되었던 것이다. 이 關稅同盟에 있어서는 加盟國相互間의 關稅를 廢止하였기 때문에 經濟領域이 擴大하여 經濟發展에 있어서 有利한 基盤이 이룩되어 졌던 것이다. 이 關稅同盟의 체결을 위하여 꾸준히 努力하였던 F. List는 즐거이 헌장의 起草에 임하였으며 또한 그는 保護關稅의 發展과 巨大한 철도망의 建設에 依하여 自己의 祖國 독일이 大工業國으로 되고 中東歐의 經濟的 指導權을 장악하게 되기를 바랐던 것이다. 1834年的 關稅同盟의 稅率은 앞서 푸로이센, 關稅率을 決定한 Maassen과 Süddentscher Zollverein의 代表者 Arnold Friedrich Freiherr von Mieg 사이의 協議에 依하여 決定되어 졌으며 이때 南部의 工業人은 勿論 푸로이센의 工業人們도 保護를 要望했음에도 不拘하고 1818年的 稅率이 基準으로 採用되어 졌던 것이다.

三. Friedrich List의 主張

1. F. List (1789~1846)의 生애

독일 經濟學의 父이며 歷史學派經濟學의 始祖이라고 볼수 있는 리스트는 또한 독일 鐵道組織의 가장 중요한 建設者이며 近代 독일 國家形成에의 큰 道標이였든 독일 關稅同盟의 有力한 促進者이였다. 그는 Reutlingen에서 出生하였으며 Württemberg의 官吏로서 그의 公的生涯를 시작하였다. Tübingen大學校에 約一年半 가량 재적한 일이 있었으나 그는 일찍부터 諸自治團體의 財政을 익혔고 또 零細農民의 궁경을 깊이 인식하고 점차 行政制度에 關한 改革意見을 強하게 갖기 시작했다. 身分的地主國家 Württemberg는 Friedrich一世와 1816年에 이를 繼承한 Wilhelm一世와의 改革努力을 執行하고 身分階級과 市民사이의 有名한 憲法論爭의 마당으로 化하였고 그 基底에는 農民해방을 위한 鬪爭이 계속되고 있었다. 이러한 事情下에서 등장한 리스트는 進步的官僚의 代表者 K. A. Freiherr von Wangenheim에게 그 才能이 인정되어 1817年에 Tübingen 大學校의 國家行政學實習의 教수로 任命되었다. 1819年에 Der Deutsche Handels und Gewerbverein이 Frankfurt/M.에서 南北독일 諸邦의 商人과 製造業者들에

依하여 結成되였다. 이것은 독일國內에 있어서의 諸關稅의 廢止와 外國에 對하여 보복의 原理를 근간으로하는 全獨的 關稅制度의 華麗을 目的으로 하는 것이었다. 旅行中에 이 會議에 참가한 리스트는 이 協會의 指導者로 추대받았으며 聯邦議會에다가 리스트가 독일商工業協會의 代表者로서 提出한 청원서는 國民的文書의 하나로서 독일國民들에게 남겨졌다. 聯邦議會自體는 何等의 政治的權力を 갖고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協會는 리스트의 責任下에서 機關紙¹¹⁾를 發刊하여 大衆的 宣傳活動을 行함과 同時에 諸邦의 官廷과 政府에 代辦者를 파견하여 그들과의 政治的協議를 誘致하는데 가장 많은 期待를 걸었었다. 이러한 工作은 제법 처음에는 희망적이었으며 푸로이센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1819年 뷔엔나에서 開催되었던 諸聯邦長官會議¹²⁾까지 가져갔었다. 그러나 오스트리아貴族들의 強力한 反對에는 無力하였다. 그리하여 리스트는 그의 희망을 Darmstadt에서 열린 關稅會議에 걸었으나 여기 亦是 아무려한 收穫도 가져오지 못하였다. 其後 協會는 解體되고 리스트는 그가 聯邦會議에 제출했던 請願의 라디칼한 內容으로 因하여 有罪宣告를 받았다. 리스트는 스위스, 英國, 불란서等地로 亡命生活을 하다가 一時 귀국했다가 체포되었으나 곧 國外移民간다는 條件으로 出獄이 허락되고 독일市民權은 박탈당하였다. 1825年 4月 그는 妻와 더불어 미국으로 向하였다. 미국에서는 피라델휘야近處의 Reading에서 週刊紙¹³⁾를 편집하였던 일도 있었다. 또한 炭礦을 經營成功하여 富를 축적하는一方 石炭輸送을 위한 鐵道의 건설을 指導했었던 일도 있었다. 1827年에 그는 保護貿易運動을 目的으로하는 한 組織¹⁴⁾의 副會長 Ch. T. Ingersoll(1782~1862)의 위촉에 依하여 피라델휘야의 National Gazette에 The American System이라는 一連의 公開狀을 發表했다.

이 公開狀은 곧 이상한 反響을 일으켜 펜실비니아協會는 卽時 이것을 冊子로 편집 出刊했다. 이것이 卽 Outlines of American Political Economy, 1826, 이다. 리스트는 미국에서 富와 名聲을 획득하였으나 그러나 祖國을 잊을 수는 決코없었다. 그의 憂國의 至情은 그를 異國에 머물게 하지 못하였다. 1832年 7月 미국의 領事資格으로서 귀국할 수가 있었다. 그러나 그의 뜻하는 바를 實現할수 있는 條件이나 機會는 그에게 허락되지 아니하였다. 1836年 또다시 祖國을 떠나야만했던 그는 1840年에야 귀국할수 있었고 그 이듬해에 그의 名著 “經濟學의 國民的體系”를 完成했던 것이다.

1841年的 가을 리스트는 20年만에 비로소 독일 市民權을 回復받았다. 그는 많은 論說을 發

11) Organ für die deutschen Handels und Fabrikanten

12) Die Wiener Ministerialkonferenzen

13) Reading Adler

14) The Pennsylvania Society for Promotion of Manufactures and Mechanic Arts.

表하는一方 鐵道組織을 위한 理論과 計劃을 展開하고 1835年에는 Eisenbahn journal를 刊行하여 大衆의 계몽에 앞장섰다. 1845~46年에 장편 “독일人の 政治的 經濟的 國民統一”(Die politische, oekonomische Nationaleinheit der Deutschen)을 發表했다. 이것은 리스트의 遺書라고 불리워진다. 그가 提唱한 英獨同盟案이 成功치 못하자 病疲한 그는 오스트리아領 Kufstein의 숙소에서 며칠 休息한 후 1846年 11月 30日 근처의 숲속에서 권총 自殺했다. 革命家 共和主義者 賣國奴 等等 모든 汚名과 雷마가 그에게 던져졌으나 그는 오직 그의 祖國 독일을 위해 묵묵히 살았던 것이다.

2. F. List의 經濟理論

리스트는 國民經濟學의 本質을 國民의 生產力의 增進이라는 點에 求하고 있으며 特殊情況에 있어서의 國民經濟學은 一國民이 如何한 手段과 方法에 依하여 個個人의 經濟를 指導하며 또한 統制하고 그리고 人類의 經濟를 制限하며 그러므로서 外國의 制限과 外國의 세력을 억제하며 또한 自國內의 生產力を 增加할수 있는가를 가르치는 것이다라고 說明했다. 그는 國民經濟學의 中心課題를 生產力의 培養이라는點에 두었다. 리스트는 富 그 自體보다 富를創出하는 힘을 더 重要視했다. Adam Smith의 主張에 依하면 勞動은 物 卽 交換價值을 生產하기 때문에 生產의이지마는 리스트에 依하면 生產力を 生產하는 것이야말로 生產의이다. 一國民의 번영은 그國民이 富 卽 交換價值를 축적하면 할수록 多大해지는 것이 아니고 國民이 生產力を 發達시키면 시킬수록 점점 多大해지는 것이다. 아담 스미스는 손과발을 通한 노동을 富의 원천으로 했는데 對하여 리스트는 도대체 손발을 生產으로 유도하는 것은 무엇이며 또한 이 手足의 努力에 有効性을 주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個個人을 움직이는 정신, 個個人의 行動의 結果인 社會的秩序, 個個人이 利用할수 있는 自然力인것이다 라고 보았다. 그리고 리스트는 生產力의 원천을 총괄하여 國民은 生產力を 첫째 各個人의 정신적 그리고 物理的힘으로부터, 둘째 그 社會的 市民的 政治的인 상태 및 制度로부터, 셋째 自由로히 획득할수 있는 天然資源으로부터 그리고 넷째로 그手中에 있는 資材와 以前의 정신적 육체적努力의 物質的 生產物로부터 얻는다고 보았다.

農業과 나란히 工業이 發達하면 스스로 國內의 商業도 發達하리라고 보았다. 리스트가 理想으로 하는 國民經濟는 結局 農工商이 균형잡힌 發展을 이룩한 상태를 가르킨다고 볼 수 있다. 리스트는 힘은 富를 확보하고 富는 힘을 增加한다. 또 힘과 富는 그 나라의 領域内에 있어서의 農商工業의 調和的 상태에 있어서 平等히 利益을 받는다. 이 調和가 없으면 一國民은 決코 強力하게도 富裕하게도 될수 없다. 단순한 農業國은 그 商品의 市場 및 그 必要品의 供給

에 關하여 外國의 法律이나 外國의 好意 또는 惡意에 依存한다. 다시 工業은 힘과 富의 源泉인 技術이나 科學이나 속련의 養成者이다. 단순한 農業國民은 항상 货物의 상태에 머물러 있으며 이러한 가난한 國民은 팔것을 많이 갖고 있지 않으며 또 사기위한手段도 많이 갖고 있지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決코 번영할 商業을 갖지 못한다. 왜그런고하면 商業은 매매보다成立하는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三產業調和論을 主張했다. 國民產業의 三構成部分의 調和를 이루하기 위하여 政府는 個個人의 產業을 制限할 수 있는 權利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問題에 答하기를 리스트는 政府는 國民의 富와 힘을 增進한다는 目的이 個個人에 依하여 이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 目的에 기여하리라고 생각되어지는 모든手段을 促進할 權利를 갖고 있을 뿐아니라. 그렇게하는 것이 政府의 의무이다라고 主張했다. 또한 政府는 法律 및 諸制限에 依하여 그 調和를 이루할 수 있을 것인가 或은 그러한 힘이 있는가라는 問題에 對하여 그는 保護手段이 有効할 것인가? 아닌가는 國民의 상태如何에 依한다고 答했다. 三產業의 調和自給自足 未開拓地에로의 人口의 進出 外國資本 및 外國技術의 導入等의手段에 依하여 自由와 獨立 國富와 國力を 希求하고 있는 나라야만 發達이 빠르며 國家의 干涉을 正當視하는 근거로서 公益과 私益과의 自然的調和를 否定하며 리스트는 自由放任의 原則을 批判하면서 이 自由放任의 原則은 個個人의 利益과 國民의 利益이 決코相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眞理일뿐이라고 論했다. 國民의 利益과 公益을 增進시키기 위하여서는 國家의 干涉이 必要하다. 萬一 國家의 干涉이 없다면 生命이나 財產의 安全, 海港의 安全, 海洋무역의 安全 그리고 領事나 公使에 依한 自國國民의 安全等을 保障할수 없으며 화폐나 度量衡에 對한 信用이 下落하고 土地所有權, 特許權, 著作權, 運河나 鐵道 國道等은 存在할수 없을 것이다라고 主張했다. 또한 全혀 放任되어진 產業은 곧 破滅한다. 萬事를 放任하는 國民은 自殺行爲를 하는 것과 같다고 보았다.

一國의 經濟政策의 任務는 그 나라가 現在 처하여있는 發展段階로부터 한층 높은 發達段階로 上昇하는 것과 같이 生產力を 發展시키는데 있다. 그러나 自由主義學派는 個個의 國民이 現在 처하고 있는 發達段階의 相異에는 全혀 주의하지 아니하였을 뿐만아니라 여러곳에서 國家權力의 干涉을 排除하고 個個人은 國家權力의 干涉이 적으면 적을수록 더욱 더 좋은 生產을 可能케 한다고 想定했다. 어떠한 特定 國家의 經濟政策의 任務가 그 나라의 生產力を 發達시키는데 있다고 하더라도 實際에 있어서 採用해야할 經濟政策의 方向에 있어서는 그 나라의 經濟의 發展段階에 依하여 甚히 相異할 것이다. 後進상태에 있는 國民은 먼저 人爲의 方策을 講究하여 先進國이 人爲의으로 이룩한 發展段階로 올려 놓치 하니하면 아니된다. 이 人爲의 方策 卽 保護關稅政策이야 말로 後進國으로 하여금 先進國과 對等의 地位에 서게하

는 唯一의 手段이다. 保護主義은 一國民의 產業育成을 目的으로 할때만 正當化되어 진다¹⁵⁾ 英國과 같이 그의 工業狀態가 發達한 國家에 있어서 또한 그것은 產業의 未來에 對하여 희망을 갖는 國民性을 欠하고 資源을 갖고 있지 아니하는 國民에게는 保護主義의 적용이 困難하다. 保護關稅制度는 思辨的인 頭腦의 發明이 아니고 諸國民의 持續과 번영의 保證 또는 權力의 우월을 目標로하는 努力의 當然의 結果이다. 리스트는 保護貿易主義의 採用은 相當히 廣大한 領土를 所有하는 大國民에 있어서만 問題視되며 群小國民은 保護主義가 全혀 응용되어 지지 아니하든가 또는 이것을 應用하드라도 充分한 結果를 얻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¹⁶⁾. 小國은 어찌한 경우에도 그 領域內에서는 여러 가지 生產部門을 完成된 段階에로까지 到達시킬 수가 없다. 小國에 있어서는 保護는 私的인 獨占으로 變할것이며 이러한 小國은 한층 強大한 國民과의 同盟에 依하여 國民性의 利益의 部分的인 희생에 依하여 또는 過度한 努力에 依하여서 그의 獨立을 겨우 主張할 수 있는데 지나지 않는다고 論했다. 保護關稅制度를 採用하는 것에 알맞는 國家에 있어서 이 나라가 採用한 保護關稅가 一時的으로는 國內에 있어서 自國製造工業品의 價格을 등귀시키기는 하지마는 將來에 있어서는 한층 低廉한 價格을 保證한다. 그리고 이 國民이 保護關稅制度를 採用함으로써 상실하는 것은 價值로 成立되는데 反하여 이 國民으로 하여금 永久히 無限의 價值觀을 生產케하는 힘을 획득하게 한다. 그러므로써 이 價值의 支出은 이 國民의 產業의in 育成의 代價로 看做되어진다. 이 工業의in 保護關稅는 農業面에 그리고 결국은 商業面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保護關稅制度는 이 制度를 採用하는 國家의 諸般事情을 충분히 고려하고 資本, 工業의in 產力 및 企業精神이 國내에 있어서增大하거나 또는 國外로부터 流入하는 程度 또는 이 國民이 以前에는 輸出하고 있던 原料品과 天然產物의 過剩을 스스로 加工할 수 있는 程度, 等等에 응하여 可能한限 段階의으로 實施해야 한다. 保護制度는 幼稚產業에 對하여서도 製造工業이 外國과의 競爭을 두려워하지 아니할 정도로 充分히 發達할 때까지는 正當化되어지지마는 國내工業力を 그根抵에 있어서 保護하는데 必要한 程度를 넘어서는 保護主義은 正當化되지 아니한다. 關稅의 保護를 必要로하는 第一段階는 一般的인 消費物品을 製造하는 工業部門이다. 保護의 目的是 國내產業의 育成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保護關稅는 養育의 關稅인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된다. 保護貿易은 一時의in 便法 일뿐이며 自由貿易이 最終의 目的인 것이다. 열렬한 愛國者이었던 리스트는 經濟學의 國民의in 體系를 수립하려고 試圖했다. 그가 主張했던 保護主義의 理論은 結局 獨일의 經濟의in 結合을 增進하고 이것을 現在 볼수 있는 것 같은 工業의in 先進國의 地位로 올려 놓는手段方法。

15) Vgl. F. List: Das nationale System der politischen Ökonomie, Stuttgart, 1841, S. 299.

16) Vgl. ジイト, リスト(宮川貞一郎譯): 經濟學說史, 上, 東京, 1941, S. 390.

에 關한 研究의 結果인 것이다.

四. 독일 商工業協會

國內에 있어서의 商業自由의 保障과 統一的 關稅國境의 確立을 通하여 독일의 國民的인 市場과 工業을 形成한다는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소위 독일商人 및 工場生產者協會 或은 독일 商工業協會(Verein deutscher Kaufleute und Fabrikanten od. der Deutsche Handels-und Gewerbs-verein)가 設立되었다. 西南독일의 產業 및 商業 브르죠아지—가 保護關稅論 荷擔이 있다. 이 協會에 있어서 가장 영향력이 커진 指導者가 바로 F. List이다. 이 協會는 1819年 4月 14日 독일의 各地로부터 參集한 商人과 生產者들에 依하여 Frankfurt/M.에서 Nürnberg의 商人 schnell을 會長으로 하고 F. List를 고문으로 조직되었다. 當初에는 라인란트, 舊프로이센, 바이에른, 작센 브템불크 헛센 다툼 슈타트 낫사우 바덴 그리고 其他 北獨의 한자都市로부터의 商人과 生產者가 會集되었다. 이 協會의 内部에 있어서는 西南독일의 要素가 優位를 占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協會의 中樞的機關은 南獨人에 依하여서 장악되어졌던 것이다. F. List를 비롯하여 協會의 代表的指導者였던 Weber aus Gera, Arnoldi aus Gotha, Bauerreis und Schnell aus Nürnberg等은 모두 西南獨에 屬한다.

이 協會의 最初의 업적은 독일關稅同盟前史에 있어서 가장 重要한 文書라고 불리워지는 聯邦議會에의 請願書의 作成提出이다. F. List를 Als Bevollmächtigter des allgemeinen Deutschen Handels-und Gewerbsverein으로 하고 70名의 前記各地의 Kaufleuten과 Fabrikanten의 連署로서 提出했었다. 푸로이센의 新關稅法이 排他的으로 오직 푸로이센의 利害만을 重視하고 主張한 것과는 달리 全독일 商工業의 立場, 상태를十分 참작하고 이근거위에다 쓰아 올렸고 이청원속에 다음과 같이 祖國 商工業의 비참한 상태를 묘사했다¹⁷⁾.

“工場生產의 大多數가 衰頹하고 萎縮된 生活을 겨우 지탱하고 있을 때, 또 大都市 및 市場이 諸外國國民의 商品에 依하여 沦濫되어지고 있을 때, 그리고 商人的 多數가 거의 無氣力한 상태에 빠져있을 때에 害惡은 極度에 이른다는 것은 더이상 論證할 必要를 느끼지 아니한다. 우리들은 聯邦議會에다 다만 하나 독일內部의 關稅와 關稅國境을 철폐하고 全聯邦共同의 關稅線의 設立에 依하여서만 독일商業 및 工業社會層 따라서 또한 食糧生產者층을 再起시킬 수 있다는 것을 확신시키기 위하여 充分한 根據를 제시한다는 것은 可能하다고 확신한다.”

署名者들은 聯邦議會에 對하여 독일國內의 關稅와 關稅國境線을 철폐하고 그리고 報復原則

17) Vgl. F. List: Schriften, Reden, Briefe, a. a. O. I. S. 491

에 甚한 關稅組織을 諸外國民에 對하여 그네들을 유우롭商易의 自由原則을 承服시킬 때까지 設定할 것을 청원했던 것이다.

독일에 있어서의 關稅 및 關稅國境線은 國內의 交通, 輸送을 阻止 또는 妨害했다. Hamburg로부터 Oesterreich로 Berlin에서 schweiz로 行할때 商人們은 10個國을 通過하고 10個所의 關稅國境制度를 研究하여 10回의 通過稅를 支拂하여야만했다. 1790年에 있어서는 約 1800의 關稅國境이 있었다고 지적되어진다¹⁸⁾. 이 分裂된 독일을 하나의 統一된 經濟的領域으로 化하게 해야하는 것이 List의 課題이었다. 나는 祖國을 사랑한다 아마 나自身의 幸福以上으로! 라고 갈파했던 List는 독일商工業協會의 Schnell協會長에게 다음과 같은 글월을 보냈다¹⁹⁾.

“두려워해서는 아니된다. 지금 우리들은 人間들의 幸福을 위하여 先導하고 있다. 真實을 公言할 것을 허락받는다면 勇氣나 힘은 決코 우리들을 버려두지 아니할 것이다. 당신은 마틴루터—의 힘찬 찬송을 알고 있겠지요. 굳건한 城이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祝福과 그리고 항상 勇氣와 힘을 주실것이다……”

확신과 勇氣를 가지고 所信의 自己의 信念을 밀고 나아가는 리스트는 많은 同調者와 署名者를 쉽게 획득할 수가 있었다. 1819年 Jubilatmesse에서 作成된 그의 文書는 Leipzig에서만 104名의 商人이 67名의 工場生產者와 같이 請願書에 公式으로 參加했던 것이다. 駐후랑크홀트佛外交官은 한 Tübingen大學교수의 지도하에 새로운 한자同盟이 成立했다고 報道했다²⁰⁾. 리스트에 依하여 이끌어지는 이 協會는 헌법에 따라 法律에 合致하는 方法에 의하여 독일商工業을 再興시키려했다. 協會는 그들의 일을 더 적극적으로 有効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저명한 機關紙 Organ für deutschen Kaufleute, Fabrikbesitzer, staatswirte und Finanzmaenner, od. Organ für den dentschen Handels und Fabrikantenstand를 뉴른벨크에서 創刊했다. 이들은 1819年 7月 10日에 初號를 發刊했으며 1821年 1月 11日까지 리스트가 편집을 擔當했다. 이 協會의 構成員은 크게 둘로 區分되어진다. 첫째는 大市商業에의 關聯을 有利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國內商業의 自由에로 志向하는 商人과 둘째는 報復原則을 要求하는 工場生產者的兩者이다. 保護關稅政策을 主張한 리스트의 學說을 吟味하기 위하여 또한 그의 發展段階理論을 살펴보겠다.

經濟構造의 歷史的發展過程을 生產形態 或은 生產樣式의 發展을 기준으로 단계지우는 것은

18) Vgl. Kulischer: a. a. O., II. S. 501.

19) Vgl. Friedrich Lenz: Friedliche List, der Mann und das Werk, 1936, S. 185.

20) Vgl. Oncken: a. a. O., I. S. 320~332.

Vgl. Friedrich Lenz: a. a. O., S. 77.

生產過程의 經濟的構造에 있어서 갖는 注目할만한 것이다. 經濟構造의 發展過程을 生產形態로부터 段階지운 가장 代表的인 理論은 리스트에 依하여 提唱되어졌다. 그는 그의 저서 Das nationale System der Politischen Oekonomie, 1841에서 國民經濟는 段階的으로 發展하여 가고 있는 것이다. 유우롭에 있어서 數世紀를 通하여 行하여진 過程은 未開상태, 牧畜상태, 農業상태, 農工商業상태 그리고 農工商業상태의 단계로 發展한다고 보았던 것이다. 未開狀態로부터 牧畜狀態로 牧畜狀態에서 農業狀態로 移行하고 있는 國民은 文明國 卽 工業國民 또는 商業國民과의 自由무역에 依하여 그 目的을 達할수 있다. 農業狀態로부터 農工狀態 또는 農工商業状态로 移行코져 하는 國民은 次上位의 段階에 있는 國民이 存在하는限 保護무역에 依하여 서만 그 目的을 達한다. 農工商業狀態에 있는 諸國民이 同時에 같은 發展過程을 계속하기 위하여서는 自由貿易 特히 热帶地方과의 무역이 有利하다고 본 리스트는 훌륭한 體系는 철두철미 훌륭한 歷史的인 기초를 갖지 아니하면 아니된다고 主張하였으며 在來의 理論偏向의인 經濟學에 對하여 歷史的이고 直觀的인 理論을 政治的인 國民經濟學의 體系속에서 구하였으며 이 러한 體系의 기초를 生產力의 理論과 이 經濟發展段階理論에 두었다. 이 兩者는 統一的으로理解되어져야만 한다. 各國民經濟의 發展段階의 差異는 그 經濟構造의 生產力의 段階差異 具體적으로는 工業力과 農業力과의 사이의 相異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그는 主張했다. 따라서 그의 段階說은 當然히 實踐的, 政治的情況의 理論이어야만 한다. 그는 英國과 그의 祖國 독일間의 生產力差에 基한 發展段階의 差를 分明히하므로서 독일의 國民經濟發展을 위하여 實踐原理를 樹立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그는 指導原理로서 다음과 같이 明示하였다

“最後로 歷史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것을 가르친다. 最高度의 富 및 세력을 획득하는데 必要한 一切의 手段을 自然으로부터 부여받고 있다. 各國民은 그들의 努力과 모순하는것 없이 그들의 進步의 比率에 응하여 그의 諸制度를 变경되어지거나 또는 变경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卽 그들은 先進國民과의 自由貿易에 依하여 未開의 상태로부터 빠져나와 自國의 農業을 發達시키고 이어 무역制限에 依하여 그의 工業, 農業, 航海業 및 外國貿易의 興隆을 促進시키고 最後로 富나 세력의 最高段階에 到達하면 점차로 自由貿易의 原理로 복귀함으로서 國內의 農業, 工業, 商業人們이 계으르게 되는 것을 막고 나아가 既得의 우월을 維持하도록 拍車를 加하지 아니하면 아니된다.” 리스트는 독일 國民經濟의 發展段階를 主로하여 英國의 그 것과 比較하므로서 英國의 發達하는 生產力에 對하여서는 독일의 그 것은 自由무역경쟁下에 있어서는 當然히 壓倒당하지 아니할수 없다는 것을 分明히 하였으며 나아가 독일 國民經濟의 發展을 위하여 保護무역정책의 必要性을 主張했던 것이다. 리스트는 國제무역에 依한 國民經濟의 發展을 다음의 四時期로 分類하였다. 第一期는 國內農業은 外國工業品의 輸入과 國內

農產物及原料品의 輸出에 依하여 發展한다. 第二期는 外國工業品의 輸入과 併行하여 國內工業이 發展한다. 第三期는 國內工業은 國內市場의 大部分에 供給한다. 그리고 第四期는 國內工業品이 大量的으로 輸出되어 外國의 原料品及 農產物이 輸入되어진다. 리스트의 段階說은 主로 유우롭諸國中 英國과 독일의 經濟發展의 生產力を 中心으로하는 比較에 있어서 Adam Smith의 自由貿易政策에 對한 保護貿易政策의 實踐的 政治的 基礎를 짓기 위하여 展開되어진 것이다.

五. 結 言

19世紀初葉에 있어서의 독일은 本質的으로 農業國的인 特異景觀을 提供하고, 그리고 여러 小主權領邦은 政治的 經濟的으로 孤立하여 있었다. 그리고 그 工業은 길드的統制에 依하여 發達이 阻止되고 農業은 封建的 束縛에 맡기워져 있었다. 그리하여 이 統制와 속박으로부터 해방을 試圖하면서 經濟的 政治的統一의 확립을 企圖하기 위하여 여러해를 보냈고 점차 產業的強國의 地位에 독일을 올려놓게 된 것은 19世紀의 最終 30年間의 일이다. 이 사이에 있어서의 독일의 近世史는 結合, 統一 安定을 위하여 努力하는 苦難의 時期였다. 푸로이센만에서도 67種이 넘는 相異한 關稅가 있었던 독일은 對外的으로 共通의 統一的 關稅線의 缺如로 因하여 先進資本主義國家들에게 自國產業을 위한 國內市場을 상실하고 또한 對內的으로는 복잡하고 無意味에 가까운 內國關稅가 各小國家의 利害의 對立과 財政的理由로 因하여 廢止乃至 整理統合되어지기가 困難했었던 故로 國內經濟의 商品經濟化는 不振하고 참다운 의미에서의 國內市場即 統一的이고 독일的인 規模에 있어서의 商品市場은 存在할 수가 없었다. 또한 當時의 여러가지 사정으로 말미암아 國內市場의 급속한 成立은 阻止되어졌을뿐만 아니라 萬一市場이 成熟하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도 即 그것은 독일의 產業資本을 위한 市場이 아니고 리스트가 지적한대로 世界의 工場國인 英國의 產業資本을 위한 市場化였다. 독일의 產業資本은 그基礎의 脆弱性때문에 英國 資本과 自由로운 競爭條件下에 서는限 스스로의 國內市場을 創設 확보한다는 것을 바랄 수가 없었다. 독일의 產業資本을 위하여 國內市場을 확보한다는 것이 리스트의 課題이었다. 이러한 國內市場의 穎득은 當然히 二課題의 同時的遂行을 強要하고 있다. 其一은 國內產業을 위하여 統一的 商品經濟地域을 創出하고 이것을 위하여 國內商品流通을 阻害하고 있었던 國內關稅의 철폐등 行政上 自由主義의 改革이고 其二是 對外的으로는 이렇게 創出되어진 國內市場에 對하여 英國商品에 依하여支配되어지는 것을 阻止하기 위하여 統一的 關稅壁의 設置이다. 即 對外的으로는 保護主義의 시설을 要求하는 것이다. 리스트는 독

일 商工業協會와 같은 機關의 先導者로서 或은 直線的인 經濟學者로서 内國關稅의 철폐와 유치상태에 있는 自國產業의 保護를 위한 Erziehungszoll制의 導入等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參與했었다. 이미 最高, 最終段階에 들어섰던 英國과 제 4와 제 5 단계의 中間에 位置한 佛蘭西등에 比하여 독일은 아직 下段階에 있었다. 保護貿易制度를 採用하여 그 距離를 短縮하여야만 했다. 계속적이고 적극적인 리스트의 努力은 독일의 關稅同盟結成에 크게 기여했으며 그의段階說을 中心으로하여 展開했던 Schutzzollpolitik은 극히 짧은 期間에 先進英國과 同位에 配列케 했다. 정신적 生產力의 重要性을 主張하고 다시 정신적 물질적兩面의 生產諸力이 有機的으로 統一되고 균형되어질 때, 리스트가 主張한 國民生產力은 확보되어진다고 생각하였던 것이다.